

# 계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

재 정 : 2000. 3. 20

1차개정 : 2004. 2. 13

2차개정 : 2008. 1. 4

3차개정 : 2012. 1. 26

## 제 1장 학교운영위원회 구성

**제 1 조 (학교 운영위원회 설치)** ① 초 중등 교육법 제 31조 1항 및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63조에 의함

② 학교법인의 정관 제 95조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 (이하 '운영 위원회' 라 한다.) 설치의 법적효력이 발생한다.

**제 2 조 (목적)**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교원, 학부모, 지역 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, 합리성, 효율성을 확보하고, 본교 설립 이념 및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 결정 기구이며,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함이다.

**제 3 조 (성격)** ① 법정 위원회 : 운영위원회는 법률,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며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다.

② 자문기구 :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,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, 의결, 자문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고, 시행에 있어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.

③ 단위학교의 자율성 : 사학의 특성과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제정, 자율적 학교 발전을 위한 학교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에 일조한다.

**제 4 조 (구성)** ① 명칭 : 계성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라 칭한다.

② 인원 : 최소 9명 최대 12명의 위원을 둔다. (초 중등 교육법 제 31조 3항 및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8조 제 1항)

③ 구성비율 : 학부모 위원 (40~50%) 4명, 교원위원(30~40%) 3명, 지역위원 (10~20%) 2명으로 한다.

**제 5 조 (위원의 자격)**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 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하고,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.

② 학부모 위원은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 하고, 교원 위원은 본교에 재직하는 자로 하며, 당연직 위원은 학교장 1명이다.

③ 지역 위원은 본교의 통학 구역내에 거주하는 인사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퇴직자,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, 본교 졸업생, 기타 학교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
④ 본교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